

기후변화대응과 보호무역의 경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

기후변화대응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제다. 많은 국가들이 환경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132개국, 822개 기업¹⁾이 탄소중립(Net zero)²⁾을 선언하였으며,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탄소중립 선언 외에도 RE100³⁾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글로벌 문제이다. 단순히 특정 오염원의 발생 혹은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이 아닌 모두의 협력 아래 기술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최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최근 탄소 국경 조정 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발표하며 유럽과 비유럽국가의 탄소배출 감축을 강화하고자 한다. 탄소 누출(Carbon Leakage)⁴⁾을 방지하고, 유럽 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볼수 있다. EU는 일찍이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강화된 환경 규제 및 저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도입된 바 있다. 다만, CBAM과 같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별 환경 규제 정책이 타국과의 통상마찰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탄소배출 감축은 무역·통상과도 긴밀하게 연계된다. 물품 생산과정 및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막대하다. 따라서 CBAM과 같은 거대한 경제연합체의 공통적인 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 규제의 한계를 넘어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탄소배출 저감 기술의 보유를 전제하고 있기에, 저감 기술력이 부족한 다른 국가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탄소배출이 많은 금속산업 및 화학공업 등은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간 산업으로, 자국 기업에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이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보호무역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즉, 개발도상국에게는 넘기 어려운 기술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추가로 부과되는 수입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EU의 CBAM이란

EU는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 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CBAM 도입에 22년 12월 잠정 합의하였다. CBAM은 EU 탄소감축 입법안 ‘Fit for 55’⁵⁾ 패키지의 하나로, 수입품목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규제 정책이다. 수입품을 대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EU

1) Net Zero Tracker(<https://zerotracker.net>) 2023.02 기준

2)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3) 2050년까지 기업에서 필요한 전력을 전량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하는 세계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

4) 탄소배출 감축을 피하고자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의 생산설비 이전

5)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역내 기업이 지불하는 탄소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⁶⁾함으로써, EU 역내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환경 규제 하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탄소배출 감축을 동일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대상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⁷⁾부터 적용하고, 이후 탄소집약적이고 배출량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2023년 10월부터는 수입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26년 이후 인증서 구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국가의 경우 원산국의 탄소가격제도 하 배출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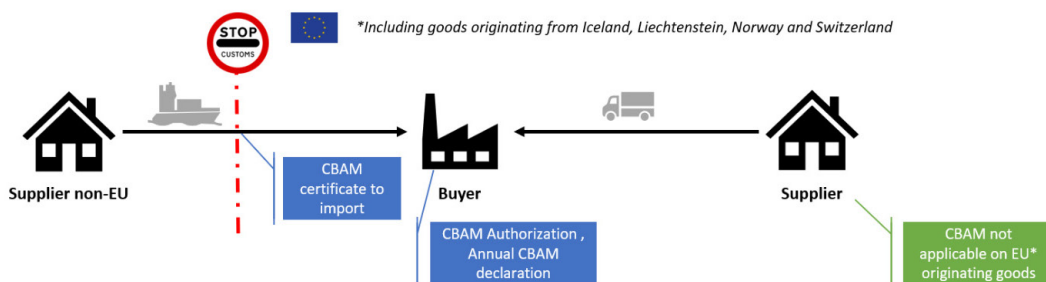
적절한 환경규제는 탄소배출 감축에 참여토록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CBAM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바 국제협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국가 간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저감기술은 물론 나아가 산업구조 전환까지도 고려해야하는 선진국의 탄소중립 행보에 지금 당장 발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이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2021년 프랑스의 CBAM 대상 품목 수입 통계(UN Comtrade Database)를 살펴보면, 무역가격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집트와 모로코에서의 비료(3102 및 3105)이며, 그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인도, 튀니지 및 베트남의 철강(72 및 7308)이다. 또한 알루미늄(7601 및 7604)은 모로코와 카메룬에서, 시멘트(2523 10 및 2523 29)는 모로코와 베트남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프랑스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체 수입하는 CBAM 대상 품목 중 개발도상국(OECD DAC Recipient list 2021)의 비중은 4% 미만으로 미미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2021년 이집트의 경우, 비료(3102) 수출 46개국 중 상위 5위 안에 프랑스가 들어간다. IEEP 보고서(2021)에 의하면, 2019년 이집트의 비료(3102 10)는 39%가 EU에서 수입되며, 전체 EU수출 중 31%를, 전체 수출의 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수 혹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규제 시행으로 수출 대상 국가만 달라질 뿐 개발도상국의 수출은 지속될 수도 있다. 하지만, CBAM과 같은 규제로 인해 무역 활로가 차단된다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녹색 혹은 탄소사다리 단절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전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은 탄소중립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에 기술 및 재원을

EU 탄소국경제도(CBAM) 도식도



자료: EY 2021, The EU-CBAM

6) CBAM 인증서와 EU ETS의 가격 연동 예정

7) HS코드: 시멘트 - 2523 10 00, 2523 21 00, 2523 29 00, 2523 90 00, 전기 - 2716 00 00, 비료 - 2808 00 00, 2814, 2834 21 00, 3102, 3105, 철강 - 72, 7301, 7302, 7303 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 -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 00 00

함께 지원이 요구된다. 나아가 기술 및 자원 지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체계⁸⁾를 수립하는 등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무역과 관련된 규제는 통상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⁹⁾를 확대하는 등 환경, 무역 등 다방면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ICA ODA 연구센터

[참고문헌]

- European Commission. 202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M(2021)564final.
- Joachim Monkelbaan and Tim Figures. 2022. “CBAM: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new EU decarbonization incentive”, <https://www.weforum.org/agenda/2022/12/cbam-the-new-eu-decarbonization-incentive-and-what-you-need-to-know/>
- Tim Gore et al. 2021. “What can climate vulnerable countries expect from the CBAM?”, <https://ieep.eu/publications/what-can-climate-vulnerable-countries-expect-from-the-cbam/>
-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

8) 한국도 CBAM 시행 등과 관련하여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 및 자원 외에도 한국형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에 노출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9) 2005년 발족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는 무역을 돕는 개발원조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성장 및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